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고 제2025 - 067호

영등포문화재단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실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전문성과 역량 있는 직원을 공개채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4일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위원장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총10명)

직종/직급	분야	직무	인원	기본급	근무지(담당업무)	비고
정년직	사무5급	영등포 생활문화센터 문화기획	1명	34,777천원	문화사업팀	지역문화 생활문화기획 7년 이상 경험자 우대
	사무6급	영등포 생활문화센터 문화기획	1명	기본 연봉채정 29,744천원	문화사업팀	지역문화 생활문화기획 지역문화공간 운영 5년 이상 경험자 우대
	사무7급	문화사업 문화기획	1명	기본 연봉채정 25,000천원	문화사업팀	문화예술교육 기획 1년 이상 경험자 우대
계약직	전문계약 7급	문화도시기획	1명	기본 연봉채정 25,000천원	문화도시센터	문화재단 및 문화도시 사업 유경험자 우대
	사업계약직	개관시간연장 사업지원인력	5명	월 2,461,811원	영등포 구립도서관	사서자격증 필수 / 졸업예정자 포함 (계약일 이전 취득)
	단기계약직	업무보조	1명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최저임금 (시간 11,779원)	영등포 구립도서관	사서자격증 우대 / 장애인 우대

※ 임금은 영등포구 생활임금 적용(2025년: 월 2,461,811원/ 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제수당 별도

■ 응시자격

-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9조(채용자격기준) 별표2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직 급	자 격 요 건
사무직 5급 (생활문화센터 문화기획)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 직급 이상에 관련 경력 2년 이상 유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또는 8급으로 5년 수준의 해당 분야 경력자 3.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기획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전항 각 호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무직 6급 (생활문화센터 문화기획)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 직급 이상에 관련 경력 1년 이상 유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 또는 9급으로 3년 수준의 해당 분야 경력자 3.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기획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전항 각 호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무직 7급 (문화사업, 문화기획)	1. 문화예술교육, 문화기획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2. 그 밖에 전항 각 호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자
전문계약 7급 (문화도시 기획)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 직급 이상에 관련 유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으로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3. 문화.예술.공연.사서 또는 홍보마케팅 등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자 등 4. 문화도시 기획 1년 이상 경험자 (우대)
사업계약 (개관연장)	1. 준사서이상 자격증 소지자 (필수) 2. 도서관 근무 경력자 (우대)(MS-office, 한글 소프트웨어 사용 등 컴퓨터 업무수행 가능한 자)
단기계약직 (업무보조)	1. 사서자격증 소지자 (우대) 2. 도서관 근무 경력자 (우대)(MS-office, 한글 소프트웨어 사용 등 컴퓨터 업무수행 가능한 자) 3. 관련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가능)

-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30조(정년)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우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점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 위 해당된 응시자는 개인정보사항(생년월일, 사진 등)을 삭제한 후, 증빙자료 사본을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우대사항 관련법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근무조건(근무일시 및 근무기간)

구 분	근무일시	근무기간
사무5급 / 사무6급 (생활문화센터 문화기획)	주 5일(40시간) 근무(9시~18시) - 주말근무 가능자로 교차근무	○ 정규직: 정년 만 60세 (연단위 근로계약 체결)
사무7급 (문화사업 문화기획)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전문계약7급 (문화도시기획)	주 5일(40시간) - 화~토 근무 (9시~18시)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사업계약직 (개관연장사서)	화~금요일(13시~22시) / 토~일(9시~18시) 순환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2025.06.04. ~ 2025.12.31.
단기계약직 (업무보조)	화~금 (9시~13시30분) - 근무시간 4시간 - 휴게시간 30분	○ 2025.06.04. ~ 2025.12.03. (6개월) ※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일시 및 시간은 부서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수사항

구분	내용
사무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은 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며,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등을 고려하여 결정, 제수당 별도 ○ 제수당은 영등포문화재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기타사항은 (재)영등포문화재단 규정에 의함
사무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연봉(임금) 책정, 영등포구 생활임금 적용(해당 시), 제수당 별도
사무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수당은 영등포문화재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전문계약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은 (재)영등포문화재단 규정에 의함
사업계약직 (개관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생활임금 적용 ○ 기타사항은 (재)영등포문화재단 규정에 의함
단기계약직 (업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생활임금 적용 ○ 기타사항은 (재)영등포문화재단 규정에 의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05. 08.(목) ~ 2025. 05. 14.(수) - 7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apply@ydpfc.or.kr)
 - ▶ 서류접수시 반드시 날인을 확인하고 제출
 -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 직종/직급/분야 중복지원 불가
 - 예) 사무6급 생활문화센터기획, 사무7급 생활문화센터기획 중복지원 불가
 - ▶ 접수기간 내 **05월 14일(수)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인정
 - ▶ 발송 제목은 반드시 「(재)영등포문화재단 신규직원 응시원서」 기재하고, 파일명은 **직종/직급_분야_이름** 순으로 기재
 - 예) **사무6급_생활문화센터문화기획_홍길동, 사무7급_문화사업,문화기획_김철수**
- 접수문의: 영등포문화재단 사무실(☎ 02-2629-2205)
- 서류합격자 발표: **2025. 05. 22.(목) 예정**(※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시: **2025. 05. 27.(화) 예정** (※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 면접장소: 서류합격자 공고문 참조

■ 전형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평가기준: 실무경력, 교육사항,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성실도, 자격·면허 소지여부
 - 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 선발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평가기준: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선발인원: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 선발
 - 단,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서류 및 면접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05. 28.(수) 예정**
-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인재채용) 공고
 - ※ 최종합격자 발표(공고)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응시자 자격요건 자가 점검표 1부.
2. 입사지원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경력기술서 1부.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거) 증명서 1부 (**장애인 보훈** 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전체 채용절차·과정에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를 금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요망
-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지원일자,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 성명 및 (인)에 도장 또는 싸인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차순위자는 예비합격자로 하며, 최초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할 시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 시험 없이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고, 모집인원 이하거나 임용된 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
- 채용 시 일정기간(6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10조 제16조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응시서류의 반환이 가능함(응시자 본인의 반환신청서 날인 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2-2068-9496) 또는 이메일(hahahj@ydpf.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답변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관련사항으로 채용 합격시, 모든 임용자는 반드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최종 임용자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시하는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